

## **붙임 1** 뉴미디어 채널 활용 홍보사업 정산기준(해외지사)

### □ 환율 기준

- 송금증 등 증빙 서류에 환율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, 해당 환율을 적용하며 별도 증빙이 없는 경우, 행사·계약기간 ‘평균 최고고시 송금 보낼 때 하나은행 환율’ 적용

\* 단, 해당 환율 미고시 및 별도 기간설정 필요 등 별도 기준 적용 필요 시 사전 본사 협의, 승인 후 추진

### □ 증빙 제출 관련

- (증빙번역) 증빙자료의 중요내용은 번역하여 첨부
- (인정증빙) 각국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영수증(세금계산서 등) 제출이 원칙이며 인보이스 등 사후 변동가능 증빙은 입금이나 송금확인서 등 확정증빙 첨부
  - \* 다만, 부득이한 상황으로 확정증빙 첨부 불가시 본사 협의, 승인 후 증빙 인정 가능
- (추가증빙) 필요시, 사업비 정산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가능
- (정산불가) 모든 사업비용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한하며, 소모품 외 자산성 비품(유형·무형) 구입 불허
- (정산항목) 항목별 정산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 본사 협의, 승인 후 추진

## □ 바이어 연계 추진사업 항목별 정산 기준

구분	세부내역	증빙 (★제출 증빙, ○결과보고 내 포함)
대행용역비	○ 일반관리비율 8% 및 이윤율(대행수수료) 10% 한도 * 근거 :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	★ 대행사 결과 보고서 ★ 계약서, 송금증 등 관련 지출증빙
섭외	○ 인플루언서 등 전문가 섭외비 - 인플루언서, 전문 셰프, MC, 동시통역, 강사 등 * 금액이 큰 항목이므로 비용 증빙 제출(이행 확인)	★ 계약서, 송금증 등 관련 지출증빙 ○ [결과보고] 프로필, 투입내역 및 결과 - 이력, 시간, 행사내용, 사진 등
홍보	○ 홍보물 기획, 디자인 및 제작 - 홍보콘텐츠 제작, 사진 촬영, 영상 제작 등 - 홍보용 증정품, 한국농식품 꾸러미 등 구입비	★ 인보이스, 송금증 등 관련 지출증빙 ○ [결과보고] 제작내역 - 구매·제작물, 수량, 활용 내역 등 ○ 결과물(사진·영상 등) * 필요시 별송 * 증정품 지급계획 시, 사전 협의 필요
	○ 마케팅비 - 증정품+경품+포인트+쿠폰+배송료 합산 전체 배정승인 예산의 25% 한도 내 승인 * 한국 농식품(꾸러미) 권장	★ 인보이스, 송금증 등 관련 지출증빙 * 고가의 경품·증정품(전자제품 등)은 원칙적으로 불가 * 판촉 홍보물 제작 시 K-FOOD 로고 활용 * K-FOOD 로고 활용 디자인, 콘텐츠의 경우 현지 여건에 맞게 활용(권고) ★ 포인트, 쿠폰 등 마케팅 내역 및 관련 지급 증빙 ○ [결과보고] 홍보내역 및 실물사진 - 수량, 활용내역 등
	○ 식재료비 : O2O 시식, 촬영·전시용 식재료 구입비 ○ 비품 및 소모품비 * 자산구입 불가 - 관련 물품 대여 및 구입 비용 등	★ 인보이스, 송금증 등 관련 지출증빙 ○ [결과보고] 이행결과 및 사진 - 물품 리스트
	○ 온·오프라인 미디어 홍보 - TV, 신문, 옥외광고, SNS 등 미디어 홍보비	★ 인보이스, 송금증 등 관련 지출증빙 ○ [결과보고] 홍보 결과 - 매체, 홍보 기간, 방법, 홍보 효과 ○ 결과물(사진·영상 등) * 필요시 별송
인건비	○ 정직원 : 총괄, 기획, 디자인, 행사 운영 등 * 대행사 소속 또는 계약직원 ○ 보조인력 - 안내 및 운영요원, 통역요원, 단순 조리사 등 * 인건비 산정시 단가표 참고 자체 산출	★ 계약서, 송금증 등 관련 지출증빙 ○ [결과보고] 인력투입 내역
임차 장치비	○ 행사장 : 야외공원, 광장, 쇼핑몰, 컨벤션 등 ○ 디자인 : 행사장 및 장치 디자인 ○ 임대비 : 음향, 조명, 전기설비 등 장비 ○ 시공비 : 행사장 구성, 장치물 제작 및 설치	★ 계약서, 송금증 등 관련 지출증빙 ○ [결과보고] 이행결과 및 사진 - 부스, 장치물 등 개수, 크기/면적, 형태 등 기본사항 명시

\* 소요예산 작성 시 위 항목 구분 기반으로 작성, 이외 기타 항목 추가 가능

\*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타수출지원사업 정산기준 준용

\* 해외지사에서 검토를 완료한 바이어의 세부 정산내역, 지사장의 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의 세부 정산내역에 대한 책임은 해외지사에게 있음

○ 바이어 연계 사업의무액

구 분	내 용	비 고										
수입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의무액 : 약정금액의 <b>2~3배(신선 2, 가공 3)</b></li> <li>- 공식 수입신고서 제출하되, 인보이스 제출 시는 B/L 첨부</li> <li>* 불가피하게 수입 증빙 제출이 어려울 시 협의 후 수출신고필증(이행완료) 제출 가능</li> <li>- 벤더(경소상) 판촉의 경우에도 납품받은 사업자(거래관계 수입상)의 수입 대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수입상으로부터의 구매영수증 동시 제출 시 인정하며 거래관계 수입상의 수입(대행)증빙은 판촉기간 전 3개월 안에 발급된 것에 한해 인정</li> <li>○ 행사기간 매출실적 제출 필수(온오프라인 공통)</li> </ul>	<p>&lt;제출증빙&gt; 수입허가(신고)서 또는 수입증빙서 단, 직접연계 판촉은 유통업체 발행 매출 증빙</p> <p>수입자(구매자)와 바이어 명이 일치해야 함</p>										
유통매장 직접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의무액 : 약정금액의 <b>2~3배(신선 2, 가공 3)</b> * 이하 상동</li> <li>- 유통매장 또는 플랫폼이 직접 수입하지 않아 수입증빙 제출이 어려운 경우 행사기간 매출실적을 수입실적으로 활용</li> <li>* 상품명, 개수, 단가, 총매출액 등이 포함된 매출실적 증빙 제출</li> <li>* 현지 온라인몰 정책 등으로 인해 온라인몰 발행 증빙이 불가할 경우 본사 사전협의 필요</li> </ul>	<p>&lt;제출증빙&gt; 수입허가(신고)서 또는 수입증빙서 단, 직접 미수입시 유통업체 발행 매출 증빙</p>										
실적 인정기간 및 환율적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입실적 : 행사기간 전 60일 + 행사기간</li> <li>○ 수출실적 : 국가별 운송기간+ 행사기간 전 60일+ 행사기간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57 1234 1206 1294"> <tr> <td>국 가 별</td> <td>일본</td> <td>중화권/동남아</td> <td>미주</td> <td>유럽 및 기타</td> </tr> <tr> <td>운송기간</td> <td>7일</td> <td>15일</td> <td>30일</td> <td>40일</td> </tr> </table> <p>환율 : 해외판촉 행사기간 평균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 환율 적용, 단 비고시환율 국가는 현지 중앙은행의 원화 환산 평균환율 적용 가능</p>	국 가 별	일본	중화권/동남아	미주	유럽 및 기타	운송기간	7일	15일	30일	40일	공통사항
국 가 별	일본	중화권/동남아	미주	유럽 및 기타								
운송기간	7일	15일	30일	40일								
달성 여부에 따른 지원액	<p>※ <b>최종지원액 = [정산 승인액(①×②) × 사업의무액 달성 비율(③)]</b>          ☞ (① 실 집행비용 × ② 지원 비율) × ③ 사업의무액 달성 비율(%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정산 승인액(①×②)은 당초 배정된 국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실 집행비용은 세부 지원기준에 따라 a가 최종 승인한 집행비용을 의미</li> <li>* 사업의무액 달성비율(%)은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(예 80.488%→80.48)</li> <li>* 단, 미디어커머스 미활성화국의 경우 또는 해당 시장 신규진출 품목인 경우 등 사전협의를 통하여 1배 이상으로 조정가능</li> </ul>	공통사항										

## 붙임 2 사업별 자체 점검기준(안)

□ 수출지원사업 사업관리 공통점검기준

사업단계 (점검주체)	체크리스트	점검주체		
		기획	본사	해외
① 본 사 세부추진계획 (수출기획부)	○ 사업자(대행사) 선정 기준은 적정한가?			
	○ 자체 점검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는가?			
	○ 사업점검 절차는 구비되어 있는가?			
	○ 사업정산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?			
② 해외지사 세부추진계획 (본사, 해외지사)	○ 사업 세부추진계획과 부합하는가?			
	○ 본사 및 지사의 사업담당자는 지정되어 있는가?			
	○ 본사 보고체계를 명시하고 있는가?			
③ 사업실행 (본사, 해외지사)	○ 과업지시서(약정서)와 동일하게 이행되고 있는가?			
	○ 자체 점검 가이드라인은 준수하고 있는가?			
④ 사업완료 (본사, 해외지사)	○ 검·인수(사업점검)는 적정하게 처리되었는가?			
	○ 사업정산 증빙은 제대로 확인하였는가?			
⑤ 결과보고 (본사, 해외지사)	○ 완료 보고 시 공통점검기준은 첨부되어 있는가?			
	○ 본사보고 등 모니터링은 계획대로 추진하였는가?			

## □ 중점관리 대상사업 자체점검 가이드라인

예상 관리 필요사항	자체점검 가이드라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용역 대행사의 본사 제작 콘텐츠 무단 편집 등 사용 오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사 제작 콘텐츠 활용 시 콘텐츠 활용 요청서 본사 요청 (별첨 양식 참고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초상권 사용기간 및 사용범위, 무단 편집사용 가능성 사전 점검 및 차단 기능</li> <li>- 필요시 aT 해외지사 확인을 거치도록 홍보대행사 과업지시서에 포함</li> </ul> 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품목별 홍보시 불확실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, 부정적 내용 기재</li> <li>○ 기타 부정적 댓글, 부정확한 이미지 (그림파일 등) 사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품목홍보는 명확한 출처 확인을 과업지시 명시, 해외지사 담당자가 확인 등 관리 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통합조직(신선) QR코드, 김치 QR코드 등 기제작된 홍보 콘텐츠와 상이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, 불분명한 내용은 반드시 본사(사업담당자 또는 품목담당자) 확인</li> </ul> </li> <li>○ 태극기 등 한국 관련 이미지 활용 시 부정확한 이미지 사용하지 않도록 과업지시 명시 또는 해외지사 수시 확인 등 관리 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관련규정(대한민국국기법 등)의 태극기의 규격, 색도 등을 준수</li> </ul> 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판촉시 한국식품 외 타국산 제품 링크 가능성</li> <li>○ 다양한 수입업체 제품 입점 기회 제공 (대기업 및 특정 제품 편중 방지 노력 경주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홍보대행사 위탁 수행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 또는 제품 링크 시 aT 해외지사 확인을 거치도록 과업지시서에 포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기 시달 온라인 게시물 확인 점검표 의거 해외지사 확인</li> </ul> </li> <li>○ 특정 업체 및 브랜드, 이미지 사용 지양 등 홍보 가이드라인 적용(참고)              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<b>특정 브랜드·이미지 사용 지양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개별 상표가 아닌 Korea Soju, Korea Kimchi 등 부류별 명칭사용 권장</li> <li>* 단, 국가 권역 최초 진출품목(제품)의 경우 직접 홍보 가능(본사 협의 필요)</li> </ul> </li> <li>● <b>한식 영문 표기 시 한식진흥원의 한식메뉴 외국어표기법 적용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한식진흥원 URL : <a href="http://www.hansik.or.kr">www.hansik.or.kr</a></li> </ul> </li> <li>● <b>판매를 위한 링크는 '한국식품관', 'K-FOOD TRADE' 등 공용 사이트 연결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클레임 소지가 있는 특정 업체, 특정 제품 링크 지양</li> </ul> </li> </ul> </div> </li> <li>○ 한국식품 수입업체 연합조직*등을 우선 활용하는 등 대기업·중소기업 균등 참여 노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필요시 출전업체 간 협의 또는 합의, 평가 등 현지 실정을 감안한 합리적 방법으로 추진</li> <li>* 세계한인무역협회, 국가별 수입유통협의회, 한국수입상연합회 등</li> </ul> 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강화 등 기타사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외지사 파견·현지직원 온오프라인 교육 시 온라인 마케팅 등을 포함 지원사업 전반 교육 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제사례 공유 및 대처방안, 바이어 및 대행업체 관리스킬 정보교환 등 교육 강화 등</li> </ul> </li> </ul>

### 붙임 3

## 대기업(공시대상기업집단) 지정 결과

### □ 대기업(공시대상기업집단) 명단('24.5.15 기준)

○ 지정 내역 : 88개 기업집단(소속회사 3,318개)

\*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목록 변경 시, 해당 변경 목록을 적용

구분		기업 집단명
공시 대상 기업 집단	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(48)	삼성, 에스케이, 현대자동차, 엘지, 포스코, <b>롯데</b> , 한화, HD현대, 지에스, 농협, <b>신세계</b> , 케이티, <b>씨제이</b> , 한진, 카카오, 엘에스, 두산, DL, 셀트리온, 에이치엠엠, 중흥건설, 미래에셋, 네이버, 현대백화점, 에스-오일, 부영, 쿠팡, 금호아시아나, <b>하림</b> , SM, 에이치디씨, 영풍, 효성, 호반건설, DB, <b>케이티앤지</b> , 케이씨씨, 장금상선, 교보생명보험, 코오롱, 오씨아이, 태영, 넥슨, 세아, 엘엑스, 넷마블, 에코프로, 이랜드
	非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(40)	한국엔컴퍼니그룹(舊 한국타이어), 태광, 금호석유화학, 다우키움, 두나무, 삼천리, <b>동원</b> , KG, HL, 한국지엠, <b>아모레퍼시픽</b> , 대방건설, 한국항공우주산업, 애경, 엠디엠, 크래프톤, <b>삼양</b> , 보성, 동국제강, 현대해상화재보험, 중앙, 글로벌세아, 아이에스지주, 유진, 영원, DN, 고려에이치씨, 오케이금융그룹, <b>BGF</b> , 대신증권, <b>하이트진로</b> , <b>농심</b> , 신영, 한솔, 반도홀딩스, 삼표, 하이브, 소노인터내셔널, 원익, 파라다이스

\* [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]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제품 단독 취급 시 50% 지원

\* 단,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(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)에 따라 **농협계열사 대기업 미적용**  
- (참고-제7항) 중앙회 계열회사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외의 다른 법률에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.